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1154호 2018년 8월 7일(화)

고 시

○ 속초 도시관리계획(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…… 2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고시 제2018-58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시 고시 제2017-84호(2017.10.16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속초시 고시 제2017-85호로 지형도면 승인된 도시관리계획(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8월 3일

속 초 시 장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1)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없음)

▣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계		33,993	-	33,993	100.0	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33,993	-	33,993	100.0	

▣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(해당없음)

2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)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33	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972-38번지 일원	33,933	증) 60	33,993	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 사유
변경	33	노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• 면적 변경 - 33,933㎡ → 33,993㎡ (증 60㎡)	•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, 토지 분할에 따른 확정 면적 오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정

3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(해당없음)

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)

▣ 공동주택용지

도면표시 번 호	가구번호	면적(㎡)		획 지			비 고
				위 치	면적(㎡)		
		기정	변경		기정	변경	
33	A	33,827	33,887	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972-38번지 일원	33,827	33,887	

5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)

도면표시번호	위치	구분		결정내용
33	A-1	용도	허용	◦「주택법」에 의한 공동주택(연립주택) 및 부대복리시설
			불허	◦ 허용용도 외의 용도
		건폐율		◦ 20% 이하
		용적률		◦ 100% 이하
		높이		◦ 4층 이하
		배치		◦ 주동간 거리를 확보하여 개방감과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 ◦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있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
		형태		◦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탑층, 주현관,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◦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는 것을 권장
		색채		◦ 속초시「경관형성기본계획」에서 제시하는 해안권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◦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(단, 자연재료, 벽돌, 석재타일, 유리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) ◦ 지역적 특색 반영을 위한 추가 색채 선택 시 반영하여 계획
		건축선		◦ 건축한계선 3m

6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고
33	A-1	◦ 단지 내 조경 - 「건축법」 및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 기준 이상 조성	
		◦ 차량진출입허용구간 -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- 차량진출입허용구간으로 결정된 부분 외에는 차량진출입 불허	
		◦ 주차장 설치기준 - 「주차장법」 및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	

2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: 실음생략